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6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9조)
- 다.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5조)
- 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 다.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8. 25. ~ 9. 1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3)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포함한다)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수행방식
4.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①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 주요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간 변경
2.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서울교육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존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교육행정6급 문미현 (02-2282-8598)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울교사 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2항제3호 중 위원회에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교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 대상 수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직위를 예시한 것이며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상이 폭넓게 열린 조항이므로 기존 개정안 문구에 의해서도 교원들의 참여가 가능함

【별첨 3】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장학사	천주영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통보일	2023. 8. 1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단, 이번 개정안은 자치법규명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개정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 예정임. 변경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부터 결과의 공개 및 활용까지의 사항을 용역 관리 단계별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연구의 질·활용도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이 목적이므로, 부패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16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의 공개 기한은 본 조례에 대한 시행지침에서 1개월 이내로 규정함을 확인 완료 		“원안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22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관	
	담당자명	문미현	전화번호 02-2282-859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관)	(성별 균형 참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정원/02-3999-546)			
정책기획관장 귀하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문미현 (02-2282-8598)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얼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전부 개정 (제1조~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함. -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원안 동의

【별첨 6】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699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28.]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일부개정]

-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